

포항공과대학교 학칙

제정 1986.11.25	개정 2000. 3. 1	개정 2006.11. 1	개정 2013. 4. 1
개정 1988. 5.12	개정 2000. 7. 1	개정 2007. 5.16	개정 2013. 9. 1
개정 1990. 5.18	개정 2000. 7.20	개정 2007.12.21.	개정 2014. 4.17
개정 1991. 8.27	개정 2000.10.12	개정 2008. 1. 1	개정 2014.10. 7
개정 1994.11.10	개정 2000.11.20	개정 2008. 3. 1	개정 2014.11. 2
개정 1996. 4.25	개정 2001. 6. 1	개정 2009. 3. 1	개정 2015. 3.10
개정 1997. 3. 1	개정 2001. 7. 1	개정 2009. 3.24	개정 2015. 4.29
개정 1998. 7. 1	개정 2003. 8. 8	개정 2009.12.27	개정 2015. 9.17
개정 1998.11.11	개정 2004. 1.31	개정 2010.11.26	개정 2016. 2. 1
개정 1999. 3. 1	개정 2005. 3. 1	개정 2010.12. 9	개정 2016. 4.21
개정 1999. 7. 5	개정 2005. 4.21	개정 2011. 4. 1	개정 2016. 6.23
개정 1999. 7. 7	개정 2005. 7.15	개정 2012. 1. 1	개정 2017. 4.20
개정 1999. 7.19	개정 2005. 8.28	개정 2012. 7. 8	
개정 1999.11.17	개정 2006. 5.21	개정 2012.11.16	
개정 1999.12. 1	개정 2006.10.12	개정 2013. 2.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함과 동시에 산·학·연의 협동으로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인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① 본 대학교에는 학사과정,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칭함),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칭함) 및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대학원 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②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를 두며, 일반대학원 과정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

과, 화학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첨단재료과학부, 융합생명공학부, 정보전자융합공학부, 첨단원자력공학부, 환경공학부 및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시스템생명공학과정, 기술경영과정을 둔다. (개정: 2012.1.1)(개정: 2012.11.16)(개정: 2013.4.1)(개정: 2014.4.17)(개정: 2016.6.23)(개정: 2017.4.20.)

③ 교양교육을 위하여 인문사회학부를 둔다.

④ 전문대학원으로는 철강대학원, 엔지니어링대학원을 두며, 특수대학원으로 정보통신대학원을 둔다. (신설: 2012.11.16)(개정: 2016.4.21.)

⑤ 학과(부)에는 전공 또는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연합하여 제공하는 융합부전공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4.29)

제3조(학과·정원) 학과별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부속기관: 교육혁신센터, 어학센터, 상담센터, 스포츠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 포항공대신문사(개정: 2016.2.1)

2. 부설연구소: 포항가속기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미래IT융합연구원, 고분자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나노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뇌연구센터, 생물공학연구소, 자동차기전연구소, 차세대바이오환경기술연구센터, 철강전문연구소, 철강 제어연구센터, 환경연구소, 항공재료연구센터, 국방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 특화연구센터,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의 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신설: 2004.1.31)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년한 · 재학년한 · 속진과정프로그램

제5조(수업년한) ① 본 대학교 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조기졸업의 경우 상기 수업년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재학년한) ① 본 대학교의 재학년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재입학자와 편입학자의 재학년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할 년한의 1.5배의 기간으로 한다.

②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의 2(속진과정프로그램) ①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 영재양성을 위해 속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설: 2005.7.15)

② 속진과정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7.15)

제 3 장 학년 · 학기 · 수업일수 · 휴업일

제7조(학년 ·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며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8월 31일

2. 제2학기 : 9월 1일~익년 2월 말일

3. 계절학기

가. 학기구분 : 여름학기, 겨울학기

나. 수업시간 : 4~8주

다. 취득학점 : 학기당 6학점 이내

③ 다만,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2.1)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8조의2(책임강의시수) 교원의 책임강의시수는 따로 정한다.

제9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휴가

2. 동기휴가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과 국정공휴일

- ② 하기 및 동기휴가 기간은 따로 정한다.
- ③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편입학·재입학

제10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2조(지원절차) ① 본 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본 대학이 당해 연도의 입시요강을 통해 요구한 서류를 갖추어 소정기일 내에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6)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6)

제13조(입학사정)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6)

제13조의 2(대학입시 공정성 심의 기구) 대학 입학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정성 심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13.2.6)

② (삭제: 2013.2.6)

제14조(입학허가자 구비서류)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부형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보증인의 주소 및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편입학) ① 편입학생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 하는 전학년(2학기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1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③ 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가 제3학년에 편입학 및 졸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 학과별 총학생수는 학과별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의 2(편입생 학점인정) 편입학생에게는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17조(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학과 및 학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1. 학칙 제6조 제2항의 재학년한 경과자
2. 학칙 제49조 제4항의 학사경고누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
3. 학칙 제50조에 의하여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제 5 장 등록 · 수강신청

제18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의 납부로서 완료된다.

제19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한 다음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강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에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 6 장 전 과

제20조(정원 및 전과시기) ①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신청은 3학기초부터 5학기초 이내에 재학중인 자로 하고, 전과시기는 3학기초부터 6학기초 이내로 한다.

제21조(절차)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및 변경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22조(전과의 허가 및 전과 후의 과정이수) 총장의 전과허가를 받은 자는 전과허가를 받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휴학 · 복학 · 제적

제23조(일반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도중에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3/4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첨부,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또는 법적 조치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3/4이후에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이 추가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1회에 한하여 최대 4개 학기까지 총장이 추가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군입대 휴학) ①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군입대(지원입대 포함)로 인하여 수학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제23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휴학의 신청학과와 동일한 학기중에 군입대 휴학을 할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으로 간주한다.

② 일반휴학 기간중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당해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과주임교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 군제대 복학은 제대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 이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

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제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1. 휴학기간 경과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학사경고를 통산3회 받은 자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학칙 제 50조에 의하여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5.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27조의2(재심청구) 제27조에 의거 교무위원회의 제적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적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장 교과 · 수업 · 학점 · 졸업

제28조(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29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 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체육 기타 총장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과정 이수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로 정한 소정의 이수학점 (120)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29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학과별로 정한 소정의 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부전공 및 융합부전공은 해당 과정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4.29)

제31조(학기당 학점 신청기준) ① 매학기 신청기준 학점은 15학점으로 하고 최대 신청학점은 학사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최대학점 신청자는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4이상으로 낙제과목(F)이 없는 자로서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1)

② 학생은 매학기 최소한 10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2조(특별학점취득) ① 교과목 중 별도로 지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3.1)

③ 고등학교에서 수강한 AP(Advanced Placement)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AP로 인정받은 학점은 학칙 제51조의 학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3.9.1)

④ 속진과정 학생은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05.7.15)

제33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6.10.12)

제34조(졸업)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이며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고 재학기간중 영어인증을 받은 자는 소정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영어인증을 받지 못하여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

②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3.4이상인 자는 6학기 이상 수료후 조기졸업 시킬 수 있다.

제35조(학위수여 및 취소) ① 졸업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위를 수여하고 부전공, 융합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개정: 2015.4.29)

1. 이학사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2. 공학사 :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3.10.)

제36조(취득학점에 의한 학년구분) 취득학점에 의한 재학생의 학년구분은 다음과 같다.

학점취득에 의한 학년 구분	학 년
30학점 취득시까지	1 학 년
31학점 이상 60학점 취득시까지	2 학 년
61학점 이상 90학점 취득시까지	3 학 년
91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4 학 년

제 9 장 전공 · 부전공 · 융합부전공 · 복수전공

제37조(전공학점)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학과별로 정한 소정의 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38조(부전공, 융합부전공)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 취득한자에게는 부전공 또는 융합부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개정: 2015.4.29)

제39조(복수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시험 · 성적

제40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단, 필요한 경우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1)

제41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평가, 출석상황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특수한 과목의 성적은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성적분류)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며 D-이상과 S를 학점취득으로 한다.

등급	A+	A°	A-	B+	B°	B-	C+	C°	C-	D+	D°	D-	F	S(급)	U(낙제)	W(포기)	I(미완)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불계	불계	불계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여부만 구분하여 S(급) 또는 U(낙제)로 표시한다.

제43조(재수강)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는 원래의 성적은 성적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으며 재수강 후 성적취득상한은 B+로 제한한다.

제44조(출석의무) ① 학생은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유고 결석사유 및 사유별 결석허용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45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원을 작성, 담당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I로 처리하고 추후 성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재하되 불응시하면 F로 처리한다.

③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성적정정마감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

제46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질상 논문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과에 대하여는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포상 · 징계

제47조(학기 포상) 품행이 단정하고 낙제과목(F)이 없는 자로서 학기말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6이상인자는 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48조(졸업포상) ① 재학기간을 통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졸업시에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구 분	평 점
최우등급(Summa cum laude)	3.9이상
상우등급(Magna cum laude)	3.6이상
우 등 급(Cum laude)	3.4이상

② 재학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9조(학사경고) ① 재학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증인, 소속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가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을 과할 수 있다.

④ 재학 중 학사경고 누적 회수가 연속 2회인 경우 1년간 유기정학에 처하고, 통산 3회인 경우 제적한다.

제50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및 훼손한 자
5. 학칙위반 및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자

②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학 점 교 류

제51조(학점교류) 국내·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9.1)

1. 해외 자매결연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3. 기타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중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 13 장 등 록 금

제52조(등록금의 납부의무)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중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허용할 수 있다.

제53조(입학금,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및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제54조(등록금의 고지)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개시전에 공시한다.

제54조의 2(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4조의 3(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4 장 장 학 금

- 제55조(장학금) ①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위탁생 · 외국인 · 장애학생 등

- 제56조(위탁생) ①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위탁생중 소정의 편·입학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위탁생은 수학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 ④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제57조(재외국민 및 외교관 등 자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1. 재외국민 및 외교관 등의 자녀(제2항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2.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7조의2(장애학생)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 활동 편의를 지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4.20.)

제 16 장 공 개 강 좌

- 제58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수강자격, 정원,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 장 대학평의회

제59조(대학평의회)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0조(구성)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자, 그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61조(소집) 평의회는 평의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이 소집한다.

제62조(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 장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제63조(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와 교수평의회를 둔다.

제64조(구성) ①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비전임교원은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교수평의회는 교수들의 대의기구이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소집)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체교수의 1/3이상

이나 교수평의회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신속히 소집하여야 한다.

제66조(심의사항) ① 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 장학, 후생에 관한 사항
 3. 교원 복리 후생에 관한 주요사항
 4. 학과, 단기과정의 신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체 교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교수평의회는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중요사항의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한다.

제 19 장 교 무 위 원 회

제67조(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68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각처장, 각학과주임교수, 인문사회학부장과 총장이 지정하는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교수평의회의장 등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이외의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0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정책사항(입학 및 졸업 사정 포함)
2. 학생지도, 장학 후생에 관한 정책사항
3. 학과, 단기과정, 전공 등 학사조직과 처단위 이상의 행정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 변경에 관한 정책사항
5. 입시제도 변경에 관한 정책사항
6. 교원 인사 주요제도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연구 주요제도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교직원 창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0 장 직 제

제71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 21 장 석좌 · 명예교수

제72조(석좌 및 명예교수) 본 대학교에는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좌 및 명예 교수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2 장 학 생 활 동

제73조(총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과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4.10.7)

제74조(학생생활위원회) ① 학생지도, 장학,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개정: 2017.4.20.)

② 학생생활위원회는 입학학생처장, 기숙사감, 체육담당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한 교수로 구성한다.

③ 학생생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학생단체의 승인) 총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학생활동) 총학생회, 사회봉사 등 학생활동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0.)

제77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

2.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외에서 대학명의를 정치적 활동
3. 대학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교육 목적 및 학내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제78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학년초에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닌 유능한 과학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23 장 학 교 기 업

제79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은 「NSB(NanoSurface Biosciences) POSTECH 학교기업」이라 한다. (신설: 2006.4.25)

② 학교기업은 교지(주소 :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에 설치한다. (신설: 2006.4.25)

③ 학교기업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와 연계하여 화학 및 생물학의 연구개발, 바이오 연구개발 및 관련제품 제조, 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신설: 2006.4.25)

제80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06.4.25)

제81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신설: 2006.4.25)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신설: 2006.4.25)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6.4.25)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4.25)

⑤ 학칙에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4.25)

제 24 장 자 체 평 가

- 제82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9.12.27)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5 장 학 칙 개 정

제83조(학칙개정절차)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07.5.16) (개정: 2012.11.16)

부 칙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198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1987학년도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4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88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되 199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제 34조 개정은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조 중 구 학칙의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휴학중인자 포함)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제34조의 수료생은 199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7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7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3조 규정은 1999학년도 2학기 수강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30조, 제37조는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

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7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중 제31조, 제36조, 제47조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

터 적용하며,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제31조는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 2항의 산업경영공학과 명칭은 2005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하며, 제4조 부설연구소는 설립, 폐쇄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2조 ②항의 삭제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 부설연구소는 설립, 폐쇄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5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4조 부설연구소는 설립, 폐쇄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제75조, 제76조, 제77조의 시행은 2006년 4월 25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5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4조 1항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제31조는 2009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이전의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1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개정은 2011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의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은 2013년 4월 22일부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 부설연구소는 설립, 폐쇄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융합부전공 도입에 관한 제도는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철강대학원 입학정원의 변경은 2016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1 중 학부 입학정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환경공학과정 폐지는 2016학년도 2학기 시작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7조의2 및 제76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지 서식)

제 호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포항공대 ○○(학)-○○○

별표1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정원

(단위: 명)

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부	대학원		소계
			석사	박사	
대학/ 일반대학원	이학부	70	100	102	202
	수학과	15	100	102	202
	물리학과	15			
	화학과	20			
	생명과학과	20			
	융합생명공학부	-			
	첨단재료과학부	-			
	공학부	180			
	신소재공학과	25	245	278	523
	기계공학과	30			
	산업경영공학과	20			
	전자전기공학과	35			
	컴퓨터공학과	25			
	화학공학과	25			
	창의IT융합공학과	20			
	정보전자융합공학부	-			
	첨단원자력공학부	-			
	환경공학부	-			
	단일계열(무학과)	70	-	-	-
	학과간 협동과정 (일반대학원)	시스템생명공학과정	-	10	15
기술경영과정		-	15	5	
전문대학원	철강대학원	-	35	15	50
	엔지니어링대학원	-	40	10	50
특수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	55	0	55
계		320	500	425	925

별표1(개정: 2018학년도부터 적용예정)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정원

(단위: 명)

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부	대학원		소계		
			석사	박사			
대학/ 일반대학원	이학부	-	100	102	202		
	수학과	-	100	102	202		
	물리학과	-					
	화학과	-					
	생명과학과	-					
	융합생명공학부	-					
	첨단재료과학부	-					
	공학부	-				245	278
	신소재공학과	-	245	278	523		
	기계공학과	-					
	산업경영공학과	-					
	전자전기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화학공학과	-					
	창의IT융합공학과	20					
	정보전자융합공학부	-					
	첨단원자력공학부	-					
	환경공학부	-					
	단일계열(무학과)	300				-	-
학과간 협동과정 (일반대학원)	시스템생명공학과정	-				10	15
	기술경영과정	-	15	5			
전문대학원	철강대학원	-	35	15	50		
	엔지니어링대학원	-	40	10	50		
특수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	55	0	55		
계		320	500	425	925		